

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
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 월 10 일

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

정 현 구



여수시 조례 제2290호

붙임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법 제50조제2항”을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국제행사 연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지원 등) ① 시장은 「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·마을버스의 무료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손실금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료 운행의 구체적인 대상 노선, 기간,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”를 “제3조 및 제3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지원 대상사업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	제3조(지원 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	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0조제2항 -----
2. ~ 12. (생략)	2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제3조의2(국제행사 연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지원 등) ① 시장은 「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 및 관람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·마을버스의 무료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.
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손실금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할

제4조(재정지원의 신청) ① 제3조에
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
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
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
 재정지원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
 한다)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
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료 운
 행의 구체적인 대상 노선, 기간, 방
 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
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재정지원의 신청) ① 제3조 및
 제3조의2-----

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